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 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인-1684, 2020.06.12

질 의

- (주)○○○○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1개월 경과 후에 제

질의내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3362, 2020.05.26

질 의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시·도시가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 2016.05.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였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면법령국조-2614, 2020.08.25

■ 질 의

-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갑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544, 2020.08.24

■ 질 의

- 신청법인은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본건 부동산 매입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는바 매매계약서상 건물 공급가액을 '0'으로 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음

질의

-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양수인이 즉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 개정된 부가법 § 29⑨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